



제 41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지역조합의 설립인가 조합원 수 기준 완화 등>
■ 주철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696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지역조합의 설립인가 조합원 수 기준 완화	3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 주철현의원 등 10인
2. 제 출 일 : 2024. 6. 20.
3. 회 부 일 : 2024. 6.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조합(지역축협 포함) 및 품목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인 설립동의자 수(지역조합 1천명 이상, 품목조합 200명 이상) 및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지역조합 5억원 이상, 품목조합 3억원 이상)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작년 기준, 설립동의자 수 1천명에 미달한 조합은 총 110개소로 전체 1,111개 조합의 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10개 조합 중 한 곳은 설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됨. 특히 지역축협의 경우 조합원 수가 부족한 조합이 전체 116개소의 절반이 넘는 66개소로 기록됨.

설립인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조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어, 농가수 감소와 농촌고령화가 조합의 존립에도 영향을 끼치는 상황임. 더구나 지역축협의 경우가 축사육거리제한·가축분뇨 규제 등 가축분뇨법에 근거한 지방조례에도 구속되는 만큼, 설립인가기준이 축산농가가 처한 현실을 실질적

으로 반영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음. 아울러 설립인가 기준은 조합 구성을 위하여 반드시 확인을 거쳐야 할 사항임에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이 직접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것 역시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됨.

이에 지역축협을 포함한 지역조합의 설립동의자 수를 현행 1천 명에서 500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동시에 시행령의 설립인가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여 농촌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설립기준 법제화로 책임감 있는 조합 설립 및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109조의2 신설).

1. 지역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완화(안 제15조제1항, 제15조의2 및 제10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설립인가 등) ① 지역농협을 설립하려면 그 구역에서 2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發起人)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u>조합원 수, 출자금 등 인가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15조(설립인가 등) ① ----- ----- ----- ----- -----, ----- ---- <u>인가 절차에 관하여</u> ----- <u>사항</u> <u>은</u> -----.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u><신설></u>	제15조의2(설립인가 기준)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역농협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u>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설립의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500명 이상일 것.</u> 다만, 해당 조합의 구역으로 하는 지역이 특별시 또는 광역시(군은 제

현행	개정안
<신설>	외한다)이거나 「섬발전촉진법」에 따른 섬지역 중 농가호수가 700호 미만인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300명 이상으로 한다. 2.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설립의 경우에는 출자금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억원 이상일 것 제109조의2(설립인가 기준) 제15조를 준용하는 제112조제1항에 따른 품목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수가 200명 이상일 것 2.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16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설립인가 취소 또는 합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가. 관계 부처 등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조합 설립인가 취소 시행 실태, 조합 규모화 정책 등을 고려할 때 설립인가에 필요한 조합원 수를 하향 조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즉, 설립인가 기준 미달로 인한 설립인가 취소는 농식품부장관의 재량행위로, 설립인가 취소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현재까지 설립인가 기준 미달을 근거로 설립인가를 취소한 사례는 없음.

또한, 조합의 규모가 영세할 경우 경제사업 위축, 자본금 부족 등으로 오히려 농업인의 조합사업 이용에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안정적인 조합경영을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원 수 및 자본금 유지가 필요함.

2) 농협중앙회

농업·농촌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설립인가 조합원 수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조합 존립의 불안정한 상태가 해소되는 경우 조합원 정예화에 따른 조합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농가인구 감소에 따른 조합원 감소는 단서 조항상 특·광역시·도에 구역을 둔 조합도 직면한 문제로 특·광역시 지역조합의 조합원 수를 200명으로 하향하는 것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개정안 관련 21대 국회 심사 경과

개정안을 검토하기 위해 앞서 개정안과 관련한 21대 심사 경과를 살펴보면, 주철현의원이 같은 내용으로 발의한 제정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20.11.20.)된 바 있었음.

전체회의 상정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소위 안건으로 상정되어 심사하였으나, 농식품부에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농식품부에 농협의 입장 확인 및 현실적 대안 마련을 주문하며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음.

< 21대 심사 경과 >

- ☐ 2020. 11.19. 주철현의원,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 2020. 11.2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2021. 2. 16. 전체회의 상정, 소위 회부
- ☐ 2021. 2. 16. 소위 상정, 심사
- ☐ 2024. 5. 29. 제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

다. 검토의견

현행법은 지역농협을 설립하려는 경우 필요한 조합원 수, 출자금 등 인가에 필요한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같은 법 시행령 제2조¹⁾는 지역조합 설립인가에 필요한 조합원 수

1)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조합

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설립의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

기준을 ① 지역농협의 경우 1천명 이상, ② 품목조합의 경우 20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농가수 감소와 농촌 고령화로 인해 조합원 수가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조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식품부장관이 현행법 제167조제1항제5호2)에 따라 설립인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조합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해당 조합들의 존립이 불안정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는데,

설립인가 조합원 수 기준을 완화하고 이를 법률에 상향 규정함으로써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품목조합의 경우 현행 200명 이상 기준을 유지하고 있음.

[현행 시행령 및 개정안 비교]

구 분	현행(시행령)		개정안	
	지역조합	품목조합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원수	1천명 이상	200명 이상	500명 이상	200명 이상
출자금	5억원 이상	3억원 이상	5억원 이상	3억원 이상

다. 이하 같다)의 수가 1천명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조합의 구역으로 하는 지역이 특별시 또는 광역시(군은 제외한다)이거나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른 도서지역 중 농가호수가 700호 미만인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인 경우에는 300명 이상으로 한다.

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설립의 경우에는 출자금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억원 이상일 것

2. 품목조합

가.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수가 200명 이상일 것

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납입확약총액이 3억원 이상일 것

- 2) 제16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의견을 들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7호에 해당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5. 조합등의 설립인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농가인구는 1995년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 제정 당시 485만명에서 2023년 209만명으로 55% 이상 감소하였고, 고령화·저출산·지방소멸 가속화 등으로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임.

[연도별 농가 및 농가인구, 65세이상 고령인구 비율]

구 분	1995년	2000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3년
농가(만호)	150	138	118	109	104	100
농가인구(만명)	485	403	306	257	231	209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	16.2	21.7	31.8	38.4	42.3	52.6

※자료: 통계청(농림어업조사 보고서)

반면, 농업인구당 경작면적은 1995년 0.41ha에서 2023년 0.72ha로 1.75배 증가하여 농업환경이 노동집약적에서 자본·기술집약적으로 변화하였음.

지난 30년간 설립인가 기준은 출자금의 경우 조합의 경영 규모 확대와 물가상승 등 사정 변화를 반영하여 증액되어 왔으나, 조합원 수는 계속해서 1천명(품목조합의 경우 200명) 이상으로 유지되어 왔음.

[조합의 설립인가기준 중 ‘출자금’ 관련 연혁]

개정일	지역조합	품목조합	비고
1981.3.31	-	1,000만원	시행규칙
1989.6.27	-	5,000만원	시행규칙
1995.6.22	1억원	1억원	시행령
2000.3.24	3억원	2억원	시행령
2005.6.23	5억원	3억원	시행령

이에 따라 2023년 12월 기준, 설립인가 조합원 수 기준에 미달하는 조합은 전체 조합 1,111개³⁾ 중 110개소로 전체조합의 약 10%에 해당하고 특히 지역축협의 경우 총 116개소 중 57%인 66개소가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⁴⁾하고 있음.

지역축협은 가축사육거리제한·가축분뇨규제 등으로 신규 축산조합원의 확보가 보다 어려운 실정으로, 9개소는 조합원 수가 500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설립인가 기준 미달 조합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지역	농협	27	30	29	34	38
	축협	53	57	57	63	66
품목	농협	-	-	-	-	-
	축협	2	4	4	4	6
	인삼협	-	-	-	-	-
합계		82	91	90	101	110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금융정책과 제출자료('24.8.14)

이와 같이 현재 전체 조합의 10%에 해당하는 조합이 이 법에 따른 인가 취소 또는 합병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불안정한 지위에 처해 있고, 농가인구 감소, 1인당 농업생산성 향상 등 농업·농촌의 환경 변화에 따른 현실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3) 전체 지역조합 현황은 참고자료1 참조

4) 1,000명 미달 지역조합 현황은 참고자료2 참조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설립인가 취소는 농식품부장관의 재량행위로 중앙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영현황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⁵⁾하고 있음.

실제 설립인가 조합원 수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유만으로 설립인가를 취소한 사례가 없고,

합병 명령은 「농업협동조합합병촉진에관한법률」의 제정('97.1.1)에 따라 2002년 3개소, 2005년 5개소에 대하여 이루어진 바 있으나, 해당 법의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는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자율합병, 합병 권고 등에 따라 합병을 이행하고 있음.

둘째, 농식품부는 소규모 지역농협은 사업기반이 취약하여 경제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 농업협동조합 목적(농업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 및 농업의 경쟁력 강화) 달성이 곤란할 것으로 보고 조합 자본 건실화,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모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조합원 수 기준이 완화되면 이러한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5) 「농업협동조합법」 제167조(설립인가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회장 및 사업전담대표이사등의 의견을 들어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합병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와 제7호에 해당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일부터 90일을 지나도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2회 이상 제164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64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에 해당 업무를 계속한 경우
5. 조합등의 설립인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후략>

이에 대하여 농협중앙회는 지역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은 사실상 유지요건으로 지역조합은 동일구역 내 신규·중복설립이 불가하여 난립의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나, 농식품부에 따르면 설립인가 기준 하향 시 구역별 임원·대의원 정수배분 등 내부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 불합치 등의 이유로 분할이 가능한 조합들이 존재함.

셋째, 현재 농식품부가 조합원 수 감소에 따른 설립인가 기준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24.5.~9.)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⁶⁾.

즉,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조합의 유지 및 성장기반 확충 필요성과 농촌 인구구조의 변화 등 환경적 요인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농협중앙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을 수용할 경우 개정안은 지역농협에 대하여 조합원 수 기준을 완화하고 있으므로, 지역축협에 관하여 지역농협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제107조에 이 조항(제15조의2)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설립인가 조합원 수 기준 완화가 지역축협에도 적용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	개정안 수용 시 수석전문위원 의견
제107조(준용규정) ①지역축협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	제107조(준용규정) ①----- -----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

6) 지난 2019년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역축협의 경우 조합원 하한선을 500명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음.

문 의 처

02)6788-5414

참고 1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현황

□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현황

구 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광역 시 등	총계
지역	농협	63	132	112	128	118	75	117	55	116	916
	축협	10	17	17	19	18	7	13	7	8	116
품목	농협	4	7	6	3	7	6	5	1	6	45
	축협	1	1	2	2	1	3	6	1	6	23
	인삼협	1	4	-	1	-	1	2	1	1	11
합계		79	161	137	153	144	92	143	65	137	1,111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금융정책과 제출자료('24.8.14)

□ 지역별 현황

지 역	구 분	지역조합	품목조합	합 계
경기	농협	132	7	139
	축협	17	1	18
	인삼협		4	4
	소 계	149	12	161
강원	농협	63	4	67
	축협	10	1	11
	인삼협		1	1
	소 계	73	6	79
충북	농협	55	1	56
	축협	7	1	8
	인삼협		1	1
	소 계	62	3	65
충남	농협	117	5	122
	축협	13	6	19
	인삼협		2	2
	소 계	130	13	143
전북	농협	75	6	81
	축협	7	3	10
	인삼협		1	1

지 역	구 분	지역조합	품목조합	합 계
	소 계	82	10	92
전남	농협	118	7	125
	축협	18	1	19
	소 계	136	8	144
경북	농협	126	3	129
	축협	19	2	21
	인삼협		1	1
	소 계	145	6	151
경남	농협	112	6	118
	축협	17	2	19
	소 계	129	8	137
제주	농협	19	1	20
	축협	2	1	3
	소 계	21	2	23
서울	농협	12	1	13
	축협	1	5	6
	소 계	13	6	19
부산	농협	13		13
	축협	1		1
	소 계	14		14
대구	농협	21	1	22
	소 계	21	1	22
인천	농협	12	1	13
	축협	2		2
	인삼협		1	1
	소 계	14	2	16
광주	농협	14		14
	소 계	14		14
대전	농협	12	1	13
	축협	1		1
	소 계	13	1	14
울산	농협	15	1	16
	축협	1		1
	소 계	16	1	17
전국	농협	916	45	961
	축협	116	23	139
	인삼협		11	11
	합 계	1,032	79	1,111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금융정책과 제출자료('24.8.14)

참고 2

설립인가 조합원 수 미달 조합 현황(2023.12.31. 기준)

시도	시군	농축협명	유형	조합원수	부족수
경기	직할	안양축산농협	지역축협	573	-427
경기	직할	부천축산농협	지역축협	498	-502
경기	직할	양주축산농협	지역축협	755	-245
경기	직할	평택축산농협	지역축협	627	-373
경기	직할	광주지구축산농협	지역축협	926	-74
경기	직할	포천축협	지역축협	966	-34
경기	직할	양평축산농협	지역축협	799	-201
경기	직할	이천축산농협	지역축협	867	-133
경기	직할	용인축산농협	지역축협	570	-430
경기	직할	고양축산농협	지역축협	722	-278
인천	직할	인천강화옹진축산농협	지역축협	735	-265
경기	직할	김포축산농협	지역축협	412	-588
경기	직할	여주축산농협	지역축협	910	-90
경기	직할	가평축산농협	지역축협	796	-204
경기	직할	남양주축산농협	지역축협	612	-388
강원	직할	원주축산농협	지역축협	725	-275
강원	직할	강릉축산농협	지역축협	588	-412
강원	직할	인제축협	지역축협	679	-321
강원	직할	고성축산농협	지역축협	418	-582
강원	직할	속초양양축협	지역축협	440	-560
강원	직할	동해삼척태백축협	지역축협	825	-175
강원	직할	강원양돈농협	품목축협	101	-99
충북	직할	괴산증평축산농협	지역축협	830	-170
충북	직할	제천단양축산농협	지역축협	736	-264
충북	직할	진천축산농협	지역축협	827	-173
충북	직할	음성축산농협	지역축협	792	-208
충남	직할	금산축산농협	지역축협	387	-613
충남	직할	논산계룡축산농협	지역축협	957	-43
충남	직할	서천축협	지역축협	673	-327
충남	직할	보령축협	지역축협	758	-242

시도	시군	농축협명	유형	조합원수	부족수
충남	직할	청양축협	지역축협	899	-101
충남	직할	예산축협	지역축협	993	-7
충남	직할	당진축산농협	지역축협	985	-15
충남	직할	아산축산농협	지역축협	706	-294
충남	직할	천안축산농협	지역축협	752	-248
충남	직할	천안공주낙농농협	품목축협	193	-7
충남	직할	홍성낙농축협	품목축협	177	-23
전북	직할	임실축협	지역축협	840	-160
전북	직할	전북지리산낙농농협	품목축협	197	-3
전남	직할	담양축산농협	지역축협	620	-380
전남	직할	여수축산농협	지역축협	465	-535
전남	직할	구례축산농협	지역축협	460	-540
전남	직할	영광축산농협	지역축협	840	-160
전남	직할	장성축산농협	지역축협	641	-359
전남	직할	보성축산농협	지역축협	965	-35
전남	직할	곡성축산농협	지역축협	568	-432
경북	직할	의성축산농협	지역축협	915	-85
경북	직할	영천축산농협	지역축협	916	-84
경북	직할	경산축산농협	지역축협	892	-108
경북	직할	청도축산농협	지역축협	712	-288
경북	직할	고령성주축협	지역축협	921	-79
경북	직할	군위축협	지역축협	937	-63
경북	직할	달성축산농협	지역축협	872	-128
경북	직할	문경축산농협	지역축협	929	-71
경북	직할	청송영양축산농협	지역축협	470	-530
경북	직할	경북대구낙농농협	품목축협	180	-20
경남	직할	함안축산농협	지역축협	610	-390
부산	직할	부산축산농협	지역축협	198	-102
경남	직할	밀양축산농협	지역축협	932	-68
경남	직할	진주축산농협	지역축협	877	-123
경남	직할	김해축산농협	지역축협	869	-131
경남	직할	창원시축산농협	지역축협	523	-477
경남	직할	사천축산농협	지역축협	643	-357

시도	시군	농축협명	유형	조합원수	부족수
경남	직할	창녕축산농협	지역축협	774	-226
경남	직할	고성축산농협	지역축협	772	-228
경남	직할	의령축협	지역축협	594	-406
경남	직할	남해축산농협	지역축협	561	-439
경남	직할	거제축산농협	지역축협	434	-566
경남	직할	양산기장축산농협	지역축협	341	-659
경남	직할	통영축산농협	지역축협	889	-111
제주	직할	서귀포시축산농협	지역축협	951	-49
전북	직할	임실치즈농협	품목축협	149	-51
경기	과천	과천농협	지역농협	985	-15
경기	파주	월롱농협	지역농협	848	-152
경기	안성	서운농협	지역농협	996	-4
강원	정선	예미농협	지역농협	951	-49
강원	태백	태백농협	지역농협	948	-52
강원	삼척	도계농협	지역농협	952	-48
강원	동해	목호농협	지역농협	844	-156
충북	영동	추풍령농협	지역농협	998	-2
충북	진천	문백농협	지역농협	970	-30
충북	충주	산척농협	지역농협	866	-134
충북	제천	백운농협	지역농협	966	-34
충남	논산	강경농협	지역농협	924	-76
충남	서산	성연농협	지역농협	961	-39
전북	전주완주	상관농협	지역농협	802	-198
전북	군산	옥산농협	지역농협	979	-21
전남	담양	무정농협	지역농협	970	-30
전남	보성	회천농협	지역농협	935	-65
전남	완도	소안농협	지역농협	944	-56
전남	목포신안	임자농협	지역농협	964	-36
대구	달성	유가농협	지역농협	983	-17
경북	구미	무을농협	지역농협	980	-20
경북	상주	은척농협	지역농협	677	-323
경북	문경	영순농협	지역농협	911	-89
경북	울진	북면농협	지역농협	948	-52

시도	시군	농축협명	유형	조합원수	부족수
경북	울릉	울릉농협	지역농협	798	-202
경남	함안	대산농협	지역농협	969	-31
경남	밀양	청도농협	지역농협	876	-124
경남	양산	하북농협	지역농협	944	-56
경남	양산	상북농협	지역농협	882	-118
경남	양산	웅상농협	지역농협	862	-138
경남	김해	주촌농협	지역농협	873	-127
경남	김해	생림농협	지역농협	955	-45
경남	창원	웅천농협	지역농협	854	-146
경남	창원	구산농협	지역농협	783	-217
경남	통영	산양농협	지역농협	951	-49
경남	거제	사등농협	지역농협	858	-142
경남	거제	일운농협	지역농협	769	-231
경남	남해	남해농협	지역농협	981	-19
110개소(지역농협 38, 지역축협 66, 품목축협 6)					

※ 자료: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농업금융정책과 제출자료('24.8.14)